

소도체 육량등급기준 개정 전·후 비교 분석 결과

R&BD센터 연구개발팀 차장 **선창완**

1. 소도체 육량등급기준 개정 현황

축산품질평가원은 불가식지방을 줄이고 고기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고비용 생산체계를 개선 하고자 소도체 육량등급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육량지수 63.30미만을 C등급으로, 67.2이상을 A등급으로 개정하여 2단계로 나누어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단계는(2011.10.1) 육량지수 62.75까지를 C등급으로 우선 적용하고 2단계는(2013.1.1) 육량지수 63.30까지를 C등급, 67.2이상부터 A등급으로 적용하게 된다.

[표1] 소도체 육량등급별 육량지수 개정 구간 및 적용일

구분	1단계 (2011.10.1 적용)		2단계 (2013.1.1 적용)	
	C등급	A등급	C등급	A등급
개정 전	62.00미만	67.50이상	62.70미만	67.20이상
개정 후	62.70미만(0.7↑)	67.20이상(0.3↓)	63.30미만(0.6↓)	67.20이상

2. 분석개요

소도체 육량등급기준 개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준 개정 시행일 전·후 6개월 동안(2011.4.1~2012.3.31.) 한우 거세우를 대상으로 등급별 출현율과 경락가격 추이를 분석하고 그 외 육량지수,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출하개월령을 분석하였다. [표2]

3. 분석결과

가. 육량등급 및 항목별 출현율

육량 B등급은 4.1% 감소한 반면, C등급은 4.7%증가하였다. 육량등급별 육량지수는 모든 등급에서 증가되었고, 특히 C등급의 육량지수가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A등급 0.1↑, B 0.3↑, C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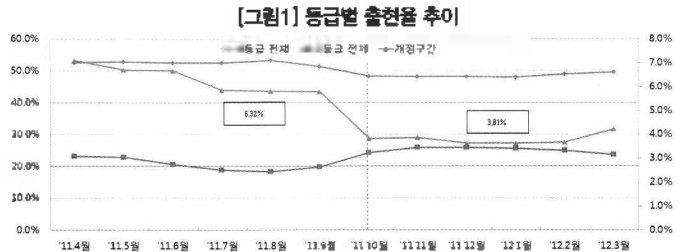
등급관정 항목에서 도체중량은 6.6kg 감소하였고, 출하개월령은 0.9개월(27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육량등급 및 항목별 출현율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육량지수			도체중량 (kg)	등지방두께 (mm)	출하개월령
				A	B	C			
개정전(a)	27.0%	52.5	20.4	68.90 (±1.4)	64.90 (±1.7)	58.80 (±3.1)	424.5	13.2	32.6
개정후(b)	26.4%	48.4	25.1	69.00 (±1.4)	65.20 (±1.6)	59.40 (±3.1)	417.9	13.2	31.7
증감(b-a)	-0.6%	-4.1	4.7	0.10	0.30	0.60	-6.6	0	-0.9

[기준 : 한우(거세우), 쇠고기이력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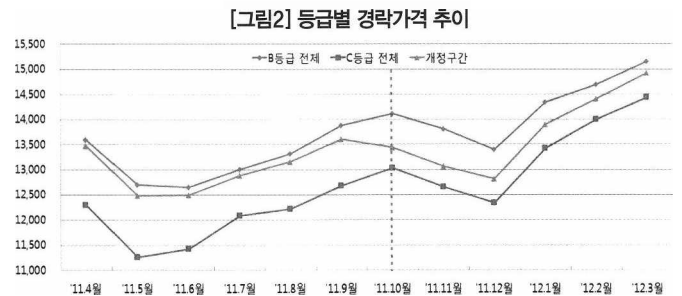
소도체 육량지수 개정구간(62.00~62.75)에 대한 출현율은 개정 전 6.32%에서 개정 후 3.81%로 2.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나. 경락가격 추이

개정된 육량지수 구간이 개정 전 B등급 일때와 개정 후 C등급이 되었을때의 경락가격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2]

개정 전에는 개정구간(62.00~62.70)이 B등급간 가격차이가 작았으나 개정 후에는 B등급과 더 큰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정구간이 기존에는 B등급이었으나, 개정 후 C등급으로 바뀐에 따라 C등급으로 경락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시사점

육량등급 개정구간에 대한 경락가격이 개정전 보다 하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림2] 도체중, 출하일령이 단축된 것으로 보아 한우 생산농가에서는 C등급 출현율을 낮추기 위해 사양 및 선별 출하 조절 등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한우 농가를 위한 제언

소도체 육량등급기준 개정은 불가식지방 생산을 줄여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정전 구간이 C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락가격이 하락함을 감안하고 한우 농가에서는 그간 출하된 성적을 참고하여 C등급 출현이 많은 농가에서는 개정된 B등급 육량지수 구간에 맞춰 출하할 수 있는 전략(육량지수, 출하개월령,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개선)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